

[별표 5] <개정 1999.8.28, 2006.1.17>

소독업의 인력·시설 및 장비기준(제20조의3관련)

1. 인력 : 대표자 외 소독업무종사자 1인 이상
2. 시설 :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
3. 장 비
  - 가.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 1대 이상
  - 나.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
  - 다. 동력분무기 1대 이상
  - 라. 수동식분무기 5대 이상
  - 마. 삭제 <2006.1.17>
  - 바.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
  - 사. 보호용 의복(상·하) 5벌 이상
  - 아.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·기구